

밥상위의 국가대표 우리돼지 한돈

소비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돼지고기
경쟁력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
재공고(긴급)
- 제안요청서 -

2024. 4.



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

목 차

I. 연구개요	
- 입찰개요	3
- 연구방법	4
- 연구내용 및 추진범위	5
- 연구기간 및 예산	6
II. 신청자격 및 제한	
- 신청자격	7
- 신청제한 및 제안 시 유의사항	8
III. 제안서 작성	
- 제출서류 및 방법	9
-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	11
IV.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	
- 심사방법	13
- 선정기준	14
- 평가 기준표	15
V. 계약조건	16

< 연구과제 >

◆ **소비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돼지고기 경쟁력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**

- 인구 분포 변화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패턴 조사·분석
- 돼지고기와 식물성 대체식품과의 소비자 인식 및 선호도 비교·분석
- 연령대별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
- 한돈산업 발전 전략 제안

1 입찰개요

- 사업명 : 소비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돼지고기 경쟁력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
- 사업목적 : 인구 감소, 고령화 등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현상을 선제적으로 조사·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한돈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 방향 모색
- 사업예산 : 65,000천원 이내 (부가세 등 일체 포함)
- 사업기간 : 계약일 ~ 5개월 이내
 - ※사업내용 중간·최종 보고회 추진 요망
-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
□ 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선정

- 연구용역의 목적에 맞는 용역계획을 제출하는 연구자·연구기관 선정
 - 연구기관과 조사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 지원 가능
 - 단, 계약은 주관기관과 체결

□ 제안서 공고 및 접수기간

- 공고 및 제안서 접수기간 : 2024. 4. 29(월) ~ 2024. 5. 20(월), 16:00까지
- 제안서 평가 및 기관 선정(예정) : 2024. 5월 말 ~ 6월 초
-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(예정) : 2024. 6월 초 ~ 6월 중순

□ 연구보고회 실시

- 착수보고회 : 별도의 착수보고회는 없으며, 계약체결 직후 연구수행 계획서와 착수 알림 공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
- 중간보고회 : 연구기간 내 중간보고회 개최(일자 협의)
- 최종보고회 : 연구기간 내 최종보고회 개최(일자 협의)
 - 보고회에서 평가에 따라 내용 보완 결정

3 연구내용 및 추진범위

□ 인구감소 및 연령대별 인구 분포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패턴 조사 분석

- 국내 인구변화 현황 및 추세 조사
- 변화된 소비자 식품 소비 패턴 및 돼지고기 소비 패턴 조사
- 향후 국내 인구변화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패턴 예측 분석

□ 돼지고기와 식물성 대체식품과의 소비자 인식 및 선호도 비교 분석

-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의 시장 현황 조사
- 돼지고기와 식물성 대체식품의 가격 등 비교분석
- 식물성 대체식품의 소비자 인식 및 선호도 조사
- 돼지고기의 소비자 인식 및 선호도 조사
- 돼지고기와 식물성 대체식품의 인식 및 선호도 비교분석

□ 연령대별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

- 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연령대별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 전략 제시
 -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한 소비 활성화 전략 제시
 - 연령대별 맞춤형 소비 촉진 전략 수립 등

□ 한돈산업 발전 전략 제안

- 변화하는 인구분포 및 소비시장에 발맞춘 한돈산업 발전 전략 제시
 - ※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연구용역에 필요한 조사·분석 및 제안

4 연구기간 및 예산

□ 연구기간 : 계약일 ~ 5개월 이내

- 심사 및 연구계약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최종보고회는 계약 종료 2주 전 진행 요망

□ 연구예산

- 연구예산 : 65,000천원 이내 (부가세 등 일체 포함)

II 신청자격 및 제한

1 신청자격

< 필수사항 >

- ◆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
- ◆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

□ 연구기관 참가자격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
- 소비자 단체 및 관련 학회, 유관협회, 조사전문업체

□ 연구책임자 신청자격

-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
-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, 임기만료, 장기 해외연수, 연구년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

2 신청제한

□ 연구기관 및 연구자 신청제한(신청 마감일 기준)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
-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음

3 제안 시 유의사항

□ 추진 일정

- 공고기간 : 2024. 4. 29(월) ~ 2024. 5. 20(월)
- 제안서 제출 : 2024. 5. 20(월) 16:00까지 (방문접수에 한함)
-제출처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5층
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미래연구소
- 사업설명회 : 제안요청서로 같음
- 경쟁 프레젠테이션 : 개별 통지

□ 제안서 작성 요령

○ 입찰서 (가격제안서, 서식)내에 원가계산서(서식), 세부산출내역서 첨부

-인감 날인 후 밀봉제출

-원가계산 기준은 우리위원회가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정산기준 참조

○ 실적증명을 제출한 실적만 수행실적증명에 작성

○ 제안서 작성 : 제출양식 참조하여 작성

-연구 추진일정,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요약 총괄표, 참여 인력 개인별 이력 사항 등 서식 참조

Ⅲ 제안서 작성

1 제출서류 및 방법

□ 제출서류

① 연구계획서 10부 및 제안서 USB(PT발표자료) 1개

② 신청서 외(각 1부)

- 입찰참가신청서 「서식 제1호」

- 법인 사업자등록증

-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원발행)

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

- 납세증명서(국세 및 지방세-해당자)

-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(연구참여자 전원)

- 입찰보증보험(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, 사업비의 5%)

·납부면제 기관일 경우, 입찰보증금 납부 협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

○ 입찰보증금 납부면제

- 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,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,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,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같음.(단, 귀속사유 발생 시 즉시 우리 위원회로 현금 납부)

③ 가격제안서 외(각 1부)

- 입찰서(가격제안서) 「서식 제2호」,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「서식 제3호」 : 인감날인 후 밀봉제출
- 신청기관 일반현황 「서식 제4호」
- 연구 경력자의 자격 및 경력(총괄표) 「서식 제5호」
- 참여인력 이력사항 「서식 제6호」
-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사업 수행실적 「서식 제7호」
- 연구계획서 「서식 제8호」

□ 제출방법

○ 서류 제출 : 2024년 5월 20일(월) 16:00 까지(방문접수에 한함)

- 제출처 :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5층 한돈자조금 한돈미래연구소
- 담당자 : 한돈자조금 한돈미래연구소 (02-6486-2919)

2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

□ 제안서 작성 요령

- 제안서 평가 항목은 평가기준표 참고
-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작성 [스프링 제본, 연구계획 목차에 따라 각 섹션별 색인표(견출지) 부착]
- 제안서 분량은 총 50쪽 내에서 제안(표지포함)(10부 제출)
-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
- 위원회가 요구한 과업 내용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

□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

- 반드시 제시된 사업 예산 내에서 제안
 - 제시된 예산을 상회하여 제안시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
- 제시되는 예산은 모두 부가세 포함가로 제시
-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접수 불가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
- 위원회는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
-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
- 기재사항이 누락 되거나 제안 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

없는 것으로 간주
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
-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
-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

□ 기타 사항

-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시 연구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접수 불가함(현장접수)
-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
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우리위원회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할 예정임
-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,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, 선정취소,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

IV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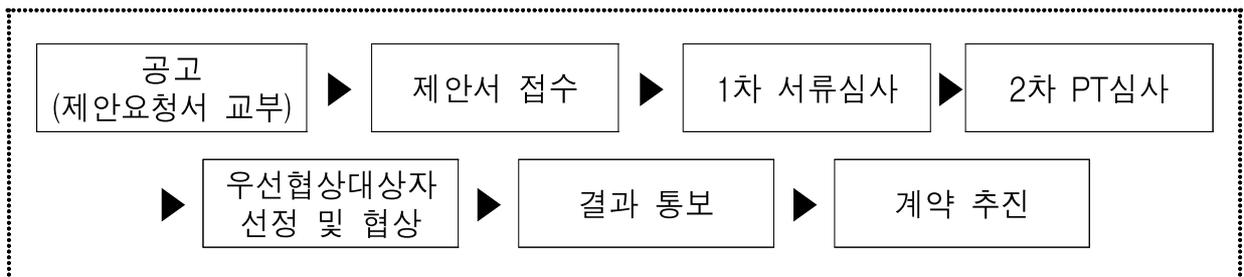
1 심사방법

□ 기본원칙

- 『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“협상에 의한 계약”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
-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서 :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,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

□ 선정절차

- 선정절차



- 1차 서류심사 및 2차 경쟁PT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 - 1차 서류심사 : 전문가 심의를 거쳐 과반 수 이상에게 80점 이상을 취득 시, 2차 PT심사 자격 부여
 - ※ 접수된 제안서가 5개 이하일 경우, 1차 서류심사는 생략함
 - 2차 경쟁PT 평가 : 총점 100점 만점(기술능력평가 80점, 가격평가 20점)
- 제안설명 : 연구자 별 20분 배정(질의·응답 시간 별도 10분)
 - ※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연구책임자가 실시
- 평가요소 : 서류심사 및 PT심사 평가표 참조

□ 심사위원회 구성

- 제안서 평가는 산술적이고 종합적인 평점 방법에 따라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(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)
- 제안서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(내·외부 인사 참여)
- 제안자는 우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사위원회 구성,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제안서 심사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함

2 선정기준

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- 서류심사 : 기준점수(80점 이상)를 평가자 과반수 이상에게 획득한 연구자(연구)에 대하여 PT심사 기회부여
- PT심사(100%) : 기술능력평가(80%) + 가격평가(20%)
 - 협상적격자 선정 :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이상인 기관
 -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
- 협상순위 :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
- 점수가 동수일 경우
 -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하고,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

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함

※ 1차 제안서 평가 결과는 2차 경쟁PT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
3 평가 기준표

□ 항목별 배점 기준

구분	평가항목		배점	배점기준
기술 평가	연구 수행능력	○ 연구기관 기존 수행실적	5	0~5
		○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	10	0~10
	연구방법	○ 연구 수행 목표 및 타당성	15	5~15
		○ 연구조사방법 타당성 및 효과성	20	5~20
		○ 연구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	15	5~15
	연구 활용성	○ 연구에 따른 결과 활용성	15	5~15
소 계(1)			80	
가격 평가	○ 제안가격 평가 -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고		20	
소 계(2)			20	
총 계(1+2)			100	

V

계약조건

제1조(목적) 이 조건은 우리위원회의 2024년도 조사연구사업 연구용역 기관 선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의 범위) 계약상대자는 우리위원회의 과업요청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사업의 착수)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.

②계약상대자는 우리위원회와 협상한 결과에 따라 사업 착수 시에 사업 계획서(사업예산 포함)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대금지급) ①본 연구비의 입출금을 위해 연구기관은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, 연구기관 종료 후 발생한 이자액을 전액 반납한다.

②선급금은 총 연구비의 70%이내 범위에서 지급가능하고, 잔금은 최종보고회 및 정산 완료 후 30%이내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·계약 집행 기준(재정경제부 회계예규)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검사 및 정산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⑤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)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15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때에는 계약상대자의

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연일수 매1 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,000분의 2.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.

제6조(계약의 해약)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1.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본 위원회의 과업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부 또는 위배하였을 때
2.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
3.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
4.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 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

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결과 제출) ①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우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(감독 및 검사) 우리위원회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·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등)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우리위원회로 제출하고 정산은 우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보안조치)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.

제11조(기타)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